

의안번호	2214953
의 퇴 인	임종득의원
회 답 일	2025.12.3.
추계번호	25D566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6조의2제1항(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)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서버, 저장장치 등 물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함
2	안 제26조의2제4항(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
2	안 제66조제3항(재난지역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의2제1항(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)	미대상: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
2	안 제26조의2제4항(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6조제3항(재난지역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핵심기반 이상 징후 자동감지 및 연계 체계구축·운영(안 제26조의2제4항)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
 - －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, 정보통신, 교통수송,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, 국민의 안전·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
-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반 이상 징후 자동감지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,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 설치, 해당 정보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,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분야별 이상 징후 자동감지 방식, 장비 등이 상이하여 유형별 수량,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, 기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 방식 및 범위 등도 현 단계에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곤란
 - － 참고로, 행정안전부가 국가핵심기반 관련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11개 주관 기관(예: 국토교통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)이 지정분야별로 제도 운영을 담당하여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, 146개 관리기관(예: 한국수력원자력 등)이 해당 지정시별 보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
 - － 2025년 현재 국가핵심기반으로 368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식용수분야가 98개로 가장 많음

[표 1] 국가핵심기반 지정시설

(단위: 개)

	에너지	정보통신	교통수송	금융	보건의료	원자력	환경	식용수	정부중요시설	공동구	문화재
지정시설	50	27	62	8	29	42	6	98	13	28	5

□ 정보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(안 제66조제3항)

-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,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비용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정보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종류와 종류별 평균 복구비용, 피해지원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,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 - 참고로, 정보시스템 마비의 가장 최근 사례는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(예: 정부24, 모바일신문증, 국민신문고 등)이 중단되었고 2025년 11월 14일에 복구 완료
 -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, 7개 부처 54개 시스템에 대한 피해액이 95억원으로 추정¹⁾

1) 연합뉴스(2025.10.26.), “정부부처 국정자원 화재 피해 최소 95억원”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